

##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□ 제안이유

- 대규모 상업용 건물의 건축은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개발이익 환수 대상임에도 면제합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
- 시행자로부터 분양받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함

### □ 주요골자

- 상업용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제한
- 제2조 제2호의 자구수정
  - 제1호에 규정한 “사업시행자로부터”로 개정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도시개발법
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

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(참 조)